

포항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11월 28일 포항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5년 11월 28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27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

•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(2025. 12. 18.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김상민 의원)

가. 개정이유

○ 농어촌의 고유 자원을 활용한 식품가공·문화관광 등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, 경관농업의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경관농업 홍보관을 운영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조례 제명 변경

- 현행 : 「포항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구성에 관한 조례」

- 변경 : 「포항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○ 조례의 목적,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제2조)

○ 경관농업 홍보관의 설치, 사용료 징수 등, 사용료의 반환, 운영의 위탁
(안 제15조 ~ 제18조)

다. 관계법령

○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30조 및 제31조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장준호)

-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농산물 및 특산품의 전시·판매 등을 제공하는 경관농업 홍보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,
- 검토결과,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농어촌의 고유 자원을 활용한 식품가공·문화관광 등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, 경관농업의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홍보관을 운영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식재작물의 면적기준 완화로 인한 제도의 실효성 저하 우려 및 사용료 면제 규정에 대한 상위법과의 정합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, 관련 기준과 규정에 대해서는 조례 취지와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추가적인 검토 및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- 그 외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 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「포항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1. 수정이유

- 경관농업지구 지정을 위한 식재작물 최소면적 기준을 경관작물과 준경관작물로 구분하여 명확히 하고, 경관농업 홍보관 운영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수정사항

- 포항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- 안 제12조의2제2항 중 “식재작물은 최소 3헥타르 이상으로”를 “식재작물 중 경관작물은 3헥타르 이상, 준경관작물은 10헥타르 이상”로 한다.
- 안 제16조제3항를 삭제한다.
- 안 제18조를 삭제하고, 안 제19조 및 안 제20조를 각각 제18조 및 제19조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12조의2(식재작물 등) ① (생 략)	제12조의2(식재작물 등) ① (현행과 같 음)
② 제1항에 따른 식재작물은 <u>최소 3 헥타르 이상으로 집단화하여 재배하 여야 한다.</u>	② -----식재작물 중 경관작 물은 3헥타르 이상, 준경관작물은 10 헥타르 이상 ----- -----.
제16조(사용료 징수 등) ①·② (생 략)	제16조(사용료 징수 등) ①·② (현행 과 같음)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공 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시설을 농산 물 전시·홍보나 농업인 교육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	<삭 제>
제18조(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로컬 농업 문화관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· 법인 또는 단체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 다)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	<삭 제>
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의 관리·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 다.	
제19조·제20조 (생 략)	제18조·제19조 (현행 제19조 및 제20 조와 같음)